

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

문서번호	BSKS-3-1-44
제정일자	2008.03.03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3

2008.03.03.제정 2011.12.01.개정 2016.04.01.개정 2020.03.18.개정 2022.04.15.개정 소판부서 : 사무처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본 기준은 정부포상 및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.) 포상에 의한 포상대 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대학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구성)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5~8인으로 위원을 구성한다.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여 선출하며, 교원인 경우 교원인사위원장, 직원일 경우 사무처장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한다. <개정 2020.03.18.>

제3조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.
- ② 위원장 부재 시에는 위원 중 교원인사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4조(회의소집 및 보고)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가름할 수 있다.
- **제5조(의결)**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6조(세부심사기준)

- ① 정부포상추천은 별표 1에 의해 적격여부를 결정한다.
- ② 대학 포상기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.
 - 가. 포상대상자의 공적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 여부
 - 나. 공적이 뚜렷하고 객관성,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
 - 다. 포상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
 - 라. 기타사항(기 포상여부, 근무년수, 근무부서, 직무분야 등)
- **제7조(위임기준)**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부포상 심사기준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

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

문서번호	BSKS-3-1-44
제정일자	2008.03.03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3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기준은 200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고등교육법 제14조①항 개정(법률 제9356호)과 관련하여 2009년 2월 9일부터 "학장"을 "총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고등교육법 제18조 ②항 개정(2011.07.21.),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-8845(2011.11.17.)호에 의거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"부산경상대학"을 "부산경상대학 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기준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기준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기준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
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

문서번호	BSKS-3-1-44
제정일자	2008.03.03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3

[별표 1] 세부 심사 기준

- 재직 경력: 교원경력 + 군 경력 + 공무원 경력 + 유급조교 경력 (교원 경력이 동일할 경우 우리대학 근무 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함)

- 공적 내용 : 다음 심사요소별로 적격여부 심사

심 사 요 소	적격여부	비고
가. 교원경력 부문		
1) 대학교원 재직기간 중 휴직 및 파견유무		
2) 유, 초 ,중 ,고 교사경력 유무		
3) 교원자격증 (유치원정교사, 준교사, 1(2)급 교원자격) 취득여부		
4) 교원자격취득이전의 교원경력 유무		
5) 임시직(전임강사대우, 학교장 발령 강사)유무		
나. 군 경력 부문		
1) 군복무여부 및 기간 확인(병적증명서, 초본 등)		
2) 장기복무(5년 이상) 유무		
다. 공무원경력 부문		
1) 공무원연금가입여부 및 기간확인(연금공단확인)		
2) 경력증명서(국가직, 지방직) 구비여부		
라. 유급조교 부문		
1) 학생(장학금보조)조교 등의 무급조교 여무확인		
2) 사학연금 가입 여부확인		
3) 인사발령대장 , 급여지급대장 증빙가능여부		
4) 경력증명서상에 유급조교 명시유무 확인		
마. 복무사항		
1) 범죄경력유무(벌금형 1회 200만원 이상 또는 벌금형 3회 이상)		
2) 수사 중 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물의 야기여부		
3) 복무기간 중 징계 및 사면 여부		
4) 홈페이지 공개여부 및 조치결과		
5) 인사기록카드상의 각종 경력에 대한 관련증빙자료 구비 여부		
6) 인사기록카드의 정리(발령일, 발령내용, 적법한 발령권자) 및 누락부문 보강여부		
7) 포상대상자에게 경력부문 확인여부		
8) 재직 중 정부포상을 수여 여부		
9) 학교발전기여 및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공적		
최종 추천 의결여부		